

선 람	기 관 의 장

제1050호 2018. 12. 21.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노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148호 2019년도 본예산 고시 ----- 2
- 삼척시 고시 제149호 활기리 산림휴양치유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승인고시 - 3
- 삼척시 고시 제151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 4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956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7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18-148호

2019년도 본예산

삼척시의 2019년도 본예산이 의결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2. 18.
삼척시장

(단위 : 천원)

회계별	구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 △ 감	증감률
합	계	546,838,207	495,045,770	51,792,437	10.5%
일	반 회 계	504,216,311	459,620,319	44,595,992	9.7%
특	별 회 계	42,621,896	35,425,451	7,196,445	20.3%
상	수 도 사 업	17,843,708	15,656,997	2,186,711	14.0%
하	수 도 사 업	4,128,710	4,435,771	△307,061	△6.9%
주	택 사 업	65,000	50,000	15,000	30.0%
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원 사 업	14,883,826	9,777,383	5,106,443	52.2%
천	연 가 스 생 산 기 지 주 변 지 역 지 원 사 업	575,000	542,000	33,000	6.1%
의	료 급 여 기 금	1,132,533	1,404,937	△272,404	△19.4%
자	활 기 금 운 영	1,159,000	1,387,050	△228,050	△16.4%
농	공 지 구 조 성 및 관 리 사 업	565,000	73,000	492,000	674.0%
주	차 장	949,349	542,520	406,829	75.0%
임	대 아 파 트 관 리 운 영	1,319,770	1,555,793	△236,023	△15.2%

삼척시 고시 제 2018 - 149호

활기리 산림휴양치유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승인고시

삼척시에서 시행하는 『활기리 산림휴양치유마을 만들기』에 대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38조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2. 18.

삼척시장

1. 사업의 명칭 : 활기리 산림휴양치유마을 만들기
2.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미로 대규모 힐링숲 조성사업과 연계한 지속가능하며 특색있는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으로 6차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사업비 : 500백만원
 - 국비 (350백만원), 지방비(150백만원)
4. 주요사업내용
 - 위 치 : 삼척시 미로면 활기리 일원
 - 지역경관개선
 - 마을진입로 가로수 식재 및 꽃길조성, 마을도로 시설물 정비
 - 마을 전통성 개선, 주택경관개선 및 전통에너지 활용 보급, 준경묘 주차장 조경 및 편의시설 설치 등
 - 지역역량강화사업
 - 주민교육, 선진지견학, 활기리 스토리텔링개발, 마을경영지원
5. 사업시행자 : 삼척시장
6. 사업기간 : 2018년 ~ 2019년(2년)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 산림과 (☎ 033-570-38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고시 제2018 - 151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물등의 신축(말소) 등의 사유로 부여(폐지)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2. 21.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가곡천로 1977-6 외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 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12. 2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기곡리 687-7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기곡천로 1977-6	20181221	건물신축	20090626	지형지물(가곡천)명칭활용	
2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상군천리 8-2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노곡로 544	20181221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노곡면)활용	
3	강원도 삼척시 갈천동 12-6	강원도 삼척시 새천년도로 559-90 (갈천동)	20181221	건물신축	20090626	동지역해안도로(기존도로명)	
4	강원도 삼척시 교동 746-11	강원도 삼척시 정상로 91-28 (교동)	20181221	건물신축	20090626	택지지역내도로구간의주요법정동(정상동)명칭활용도로명	
5	강원도 삼척시 교동 746-12	강원도 삼척시 정상로 91-34 (교동)	20181221	건물신축	20090626	택지지역내도로구간의주요법정동(정상동)명칭활용도로명	
6	강원도 삼척시 정상로 91-20 (교동)	폐지	20181221	건물철거	20090626	택지지역내도로구간의주요법정동(정상동)명칭활용도로명	
7	강원도 삼척시 오분동 231-11	강원도 삼척시 오분1길 112 (오분동)	20181221	건물신축	20090626	일련번호방식적용(오분길분기)	
8		이	하	여	백		
9							
10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주소	주소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기곡리 687-7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기곡천로 1977-6	20181221	건물신축	20090626	지형지물(기곡천)명칭활용	
	2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상군천리 8-2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노곡로 544	20181221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노곡면)활용	
	3	강원도 삼척시 갈천동 12-6	강원도 삼척시 새천년도로 559-90 (갈천동)	20181221	건물신축	20090626	동지역해안도로(기존도로명)	
	4	강원도 삼척시 교동 746-11	강원도 삼척시 정상로 91-28 (교동)	20181221	건물신축	20090626	택지지역내도로구간의주요법정동(정상동)명칭활용도로명	
	5	강원도 삼척시 교동 746-12	강원도 삼척시 정상로 91-34 (교동)	20181221	건물신축	20090626	택지지역내도로구간의주요법정동(정상동)명칭활용도로명	
	6	강원도 삼척시 정상로 91-20 (교동)	폐지	20181221	건물철거	20090626	택지지역내도로구간의주요법정동(정상동)명칭활용도로명	
	7	강원도 삼척시 오분동 231-11	강원도 삼척시 오분1길 112 (오분동)	20181221	건물신축	20090626	일련번호방식적용(오분길분기)	
		계	7 건					

삼척시 공고 제2018-956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계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계시판 및 홈페이지
- 2. 공고기간 : 2018.12.19. ~ 2019.1.2. (15일간)
- 3. 말소(예정)일자 : 2019.1.3
-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심수○
	주소 (대장상주소)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한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지번 : 강원도 삼척시 당저동 90	
	목조 (1층:38.4㎡ 주택, 1층:15.4㎡ 주택, 1층:8.06㎡ 주택)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 5. 유의 사항
 -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033-570-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2. 19.

삼 척 시 장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당사자	성명	
	주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번호)
성명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강원도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 관리부서

○ 연 락 처 : 033)570-3965